

#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0.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00. 7. 4) 상정, 심사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2000. 7. 5)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주요골자

○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일반회계	272,311,000	237,027,260	35,283,74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억 7,231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상담관 제도가 폐지된 민원상담관 27명과 일용직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회신에 의한 지급지시에 의하여 1억 2,543만 3,640원이 지출되었고, 망월1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비용으로 4,731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5,485만 620원 등 총

지출액은 2억 3,702만 7,26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9,013만 2천원이 지출결정된 예비비에서 3,528만 1,380원이 불용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의 법정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는 보조사업으로써 '99. 10. 14 간주처리된 국고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어 구비부담을 25%에 해당하는 9,013만 2천원을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비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생계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예측 판단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박왕희 사회복지과장) :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25%를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측한 대상인원이 실제인원보다 과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06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 2. 주요골자

-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출검정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회계	272,311,000	237,027,260	35,283,740

## 3. 제출서류

-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 따로붙임

# 예비비지출 총괄표

## 회 일반회계

(단위 : 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장	관	항			
합 계			272,311,000	237,927,260	35,283,740
1000	일반행정비		170,777,000	170,775,250	1,750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47,311,000	47,311,000	0
		1110 지방의회의원선거	47,311,000	47,311,000	0
	1200	일반행정비	123,466,000	123,464,250	1,750
		1230 행정관리	116,270,000	116,268,740	1,260
		1260 재무행정	7,196,000	7,195,510	490
2000	사회개발비		94,624,000	59,342,620	35,281,380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4,492,000	4,492,000	0
		2220 환경산업	4,492,000	4,492,000	0
	2300	사회보장비	90,132,000	54,850,620	35,281,380
		2310 일반사회복지	90,132,000	54,850,620	35,281,380
3000	경제개발		4,970,000	4,969,390	610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4,970,000	4,969,390	610
		3310 건설관리	4,970,000	4,969,390	610
4000	민방위비		1,940,000	1,940,000	0
	4100	민방위관리	1,940,000	1,940,000	0
		4110 민방위관리	1,940,000	1,940,000	0

# 1999 예비비 지출내역

## ■ 일반회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내 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합 계						272,311,000	237,027,260	35,283,740	
1000 일반행정비						170,777,000	170,775,250	1,750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47,311,000	47,311,000	0	
1110 지방의회 의원선거						47,311,000	47,311,000	0	
1111 의회의원선거						47,311,000	47,311,000	0	
220 자체사업						47,311,000	47,311,000	0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47,311,000	47,311,000	0	구의원 재선거 실시경비
1200 일반행정비						123,466,000	123,464,250	1,750	
1230 행정관리						116,270,000	116,268,740	1,260	
1235 민원봉사관리						116,270,000	116,268,740	1,260	
120 경상적경비						116,270,000	116,268,740	1,260	
301 일반보상금						83,950,000	83,949,650	350	민원상담관 퇴직금 지급
301 일반보상금						32,320,000	32,319,090	910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단위 : 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비용외	내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1260 재무행정				7,196,000	7,195,510	490	
			1264 세무2관리			7,196,000	7,195,510	490	
				120 경상적경비		7,196,000	7,195,510	490	
					301 일반보상금	7,196,000	7,195,510	490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2000		사회개발비				94,624,000	59,342,620	35,281,380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4,492,000	4,492,000	0	
		2220	환경산업			4,492,000	4,492,000	0	
			2221	산업위생관리		4,492,000	4,492,000	0	
				210	보조사업	4,492,000	4,492,000	0	
					302 이주및재해 보상금	4,492,000	4,492,000	0	호우피해 재해능가 복구비
	2300	사회보장비				90,132,000	54,850,620	35,281,380	
		2310	일반사회복지			90,132,000	54,850,620	35,281,380	
			2312	저소득주민보호		90,132,000	54,850,620	35,281,380	
				210	보조사업	90,132,000	54,850,620	35,281,380	
					301 일반보상금	90,132,000	54,850,620	35,281,380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내 용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3000						4,970,000	4,969,390	610	
	3300					4,970,000	4,969,390	610	
		3310				4,970,000	4,969,390	610	
			3311			1,970,000	1,969,390	610	
				120		1,970,000	1,969,390	610	
					301	1,970,000	1,969,390	610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3312			3,000,000	3,000,000	0	
				220		3,000,000	3,000,000	0	
					401	3,000,000	3,000,000	0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
4000						1,940,000	1,940,000	0	
	4100					1,940,000	1,940,000	0	
		4110				1,940,000	1,940,000	0	
			4111			1,940,000	1,940,000	0	
				210		1,940,000	1,940,000	0	
					206	1,940,000	1,940,000	0	방독면구입에 따른 우리구 부담분 확보